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5.

발 의 자 : 김병기 · 강득구 · 강선우
강준현 · 고민정 · 곽상언
권칠승 · 권향엽 · 김교홍
김기표 · 김남근 · 김남희
김동아 · 김문수 · 김민석
김병주 · 김상욱 · 김성환
김성희 · 김승원 · 김영배
김영진 · 김영호 · 김영환
김용만 · 김용민 · 김우영
김원이 · 김 윤 · 김윤덕
김정호 · 김주영 · 김준혁
김태년 · 김태선 · 김한규
김 현 · 김현정 · 남인순
노종면 · 맹성규 · 모경종
문금주 · 문대림 · 문정복
문진석 · 민병덕 · 민형배
민홍철 · 박균택 · 박민규
박범계 · 박상혁 · 박선원
박성준 · 박수현 · 박용갑
박 정 · 박정현 · 박주민
박지원 · 박지혜 · 박찬대
박해철 · 박홍근 · 박홍배

박희승 · 백승아 · 백혜련
복기왕 · 부승찬 · 서미화
서삼석 · 서영교 · 서영석
소병훈 · 손명수 · 송기현
송옥주 · 송재봉 · 신영대
신정훈 · 안규백 · 안도걸
안태준 · 안호영 · 양문석
양부남 · 어기구 · 염태영
오기형 · 오세희 · 위성곤
유동수 · 윤건영 · 윤종균
윤준병 · 윤호중 · 윤후덕
이강일 · 이개호 · 이건태
이광희 · 이기현 · 이병진
이상식 · 이성윤 · 이소영
이수진 · 이언주 · 이연희
이용선 · 이용우 · 이원택
이인영 · 이재강 · 이재관
이재정 · 이정문 · 이정현
이주희 · 이학영 · 이해식
이훈기 · 임미애 · 임오경
임호선 · 장경태 · 장종태
장철민 · 전용기 · 전재수
전진숙 · 전현희 · 정동영
정성호 · 정을호 · 정일영
정준호 · 정진욱 · 정청래
정태호 · 조계원 · 조승래
조인철 · 조정식 · 주철현

진선미 · 진성준 · 차지호
채현일 · 천준호 · 최기상
최민희 · 추미애 · 한민수
한병도 · 한정애 · 한준호
허성무 · 허영 · 허종식
홍기원 · 황명선 · 황정아
황희의원(16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,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병기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96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금융위원회”를 각각 “금융감독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중 “금융감독원장의”를 “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”로, “금융감독원장으로”를 “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금융위원회”를 “금융감독위원회”로, “금융감독원장의”를 “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”로, “금융감독원장으로”를 “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”로 한다.

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금융위원회”를 각각 “금융감독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중 “금융감독원장의”를 “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”로, “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”를 “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”를 “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금융위원회”를 “금융감독위원회”로, “금융감독원장의”를 “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”로, “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“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4호 또

는 제5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금융감독원장은”을 “금융감독위원회는”으로, “제2항 각 호”를 “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호의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금융위원회”를 “금융감독위원회”로, “금융감독원장의”를 “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”로, “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”을 “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”을 “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
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
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
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
정한다.

1. ~ 7. (생략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
6호가목·다목·마목, 같은 조
제7호라목·마목·바목에 해당
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
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
에 따른다.

1.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
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
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
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
호,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
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
항제3호, 제5호 및 제6호에 해
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
다.

2.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
목·마목, 같은 조 제7호라목

-----.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금융감독위원회-----

----- 금융소비자
보호원장의 -----

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---

-----.

2. 금융감독위원회-----

· 마목 ·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52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

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-----

-----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-----

-----.

제52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금융감독위원회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금융감독위원회-----

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·다목·마목, 같은 조 제7호라목·마목·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2.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·마목, 같은 조 제7호라목·마목·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금융감독위원회-----

-----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---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-----

--.

2. 금융감독위원회-----

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,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·다목·마목, 같은 조 제7호라목·마목·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

1.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2.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·마목, 같은 조 제7호라목·마목·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

-----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-----

--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-----
-----.

④ -----

1. 금융감독위원회는 -----

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호의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---

2. 금융감독위원회-----

